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17개 시·도 한데 모여 차질 없는 시행 논의

-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2.1.)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회의 개요

- 일시 : 2024.2.1.(목) 15:00 ~ 16:30
- 장소 :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등
(시·도) 17개 시·도 담당 국장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올해 7월 19일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올해 7월 19일,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또한 올해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 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된다(단, 방문 신청 필수).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되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되었다.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사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출생통보제 개요
 2.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4. '25.7월 입양체계 개편 전후 절차별 수행 주체 변화
 5. 디딤씨앗통장 '24년 사업개요 및 홍보물

담당 부서 <총괄, 보호출산>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욱수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이길원 (044-202-3409)
			사무관	임예슬 (044-202-3429)
담당 부서 <출생통보제, <사전건강관리>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044-202-3390)
		담당자	사무관	유미나 (044-202-3391)
			사무관	이수빈 (044-202-3403)
담당 부서 <입양제도>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제도개편팀	책임자	팀 장	이유리 (044-202-3411)
		담당자	사무관	이현희 (044-202-3427)
담당 부서 <디딤씨앗통장>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황지민 (044-202-3439)
담당 부서 <아동학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044-20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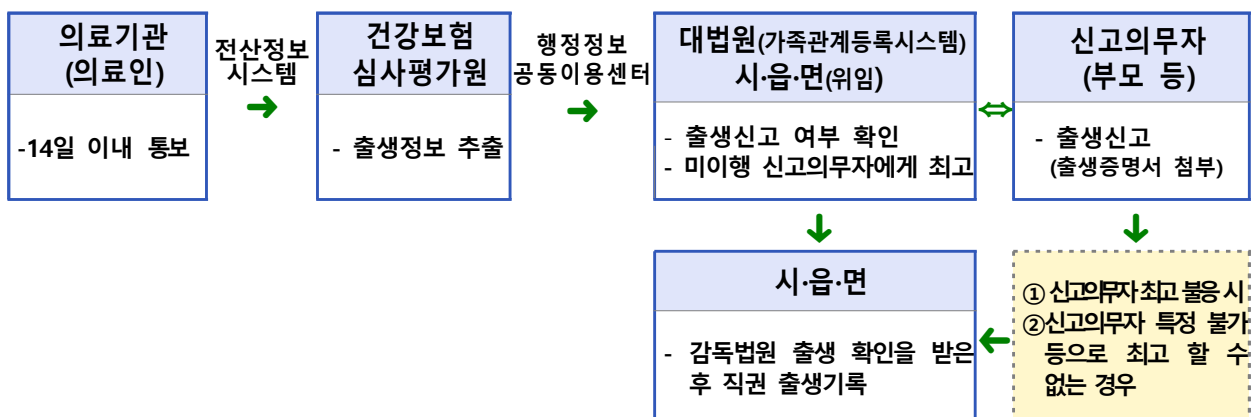
1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①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②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①(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②(심평원→시·읍·면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읍·면장에 통보
- (최고)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
- (직권출생기록) ①최고기간(7일) 내 未신고,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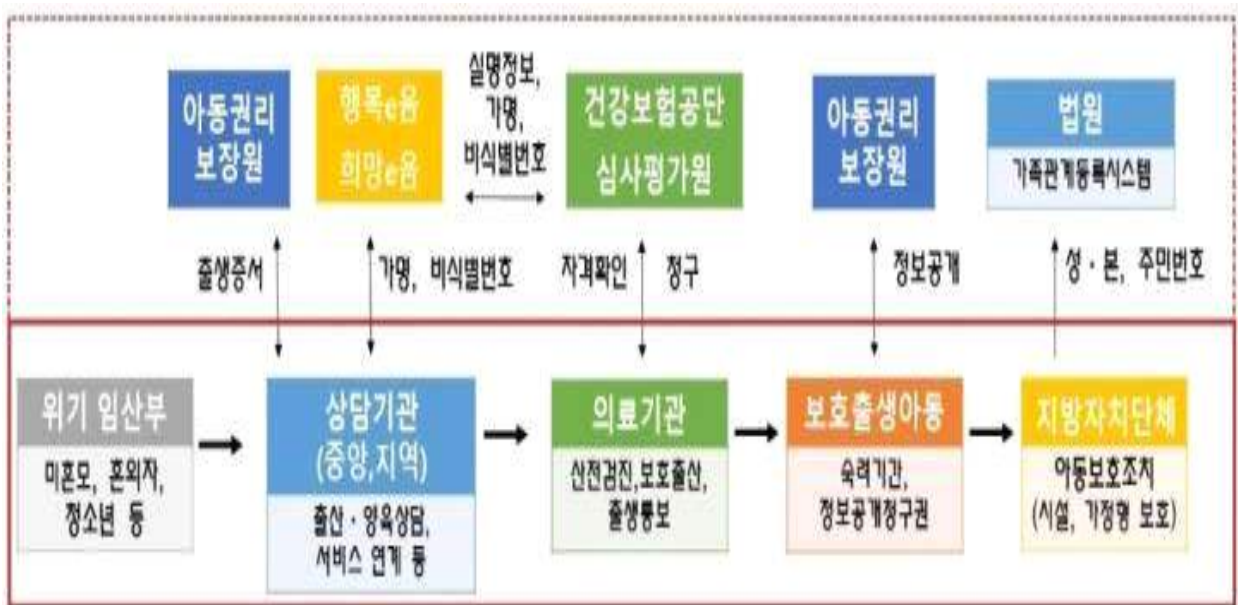
1 개요

- 위기 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2 주요 사업내용

-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 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붙임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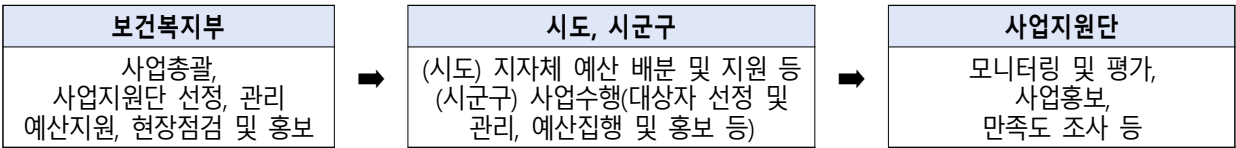
-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023.7.27.), 「모자보건법」

*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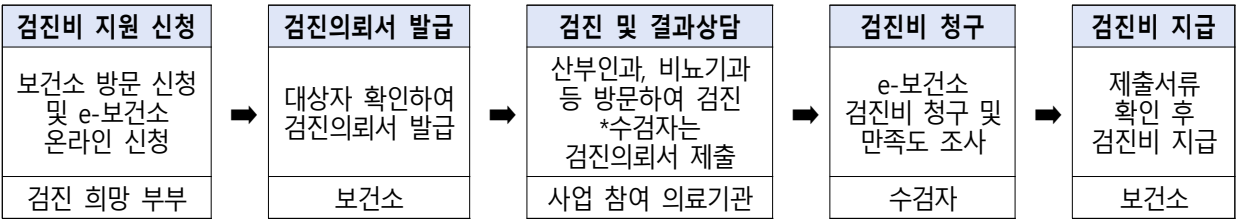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목적)** ❶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및 ❷의료·보건학적 개입·중재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사업내용)**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16개 시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8.2만쌍(16.4만명)
 * 서울시는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25년 참여 예정
 - **(지원금액 및 항목)**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 **(추진체계)** 복지부, 시도·시군구, 사업지원단(공모) 등 역할 분담



- **(대상자 검진신청 및 비용청구, 지급절차)**



- **(사업예산)** 검진비 61.5억 원(지자체경상보조 50%), 사업지원 1억 원

붙임 4

25.7월 입양체제 개편 전후 절차별 수행 주체 변화

[국내입양]

(입양절차)		현행	개편
①입양대상아동	친생부모 상담·조사	지자체	지자체
	결정	지자체	지자체
	보호	민간 입양기관	지자체
②예비양부모	신청·상담·조사	민간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위탁 가능)
	자격 심의	민간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③아동-양부모 결연		민간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④임시양육결정 (신설)		-	가정법원
⑤입양허가		가정법원	가정법원
⑥사후관리	적응상황 점검	민간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위탁 가능)
	정보공개청구	민간 입양기관·보장원	보장원

[국제입양]

○ 나가는 입양 (OUT, 우리나라는 출신국)

(입양절차)		현행	개편
①입양대상아동	아동보고서작성	민간 입양기관	지자체
	국제입양 결정	민간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②예비양부모	신청·상담·조사	예비양부모 → 입양국	예비양부모 → 입양국
	양부모보고서작성	입양국	입양국
	자격 심의	입양국	입양국
③아동-양부모 결연 (보호대상아동)		민간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④입양허가		가정법원	가정법원 (체약국간 효력 자동인정)
⑤사후관리	적응상황 점검	입양국	입양국
	정보공개청구	민간 입양기관·보장원	보장원

○ 들어오는 입양 (IN, 우리나라는 입양국)

(입양절차)		현행	개편
①입양대상아동	아동보고서작성	-	출신국
	국제입양 결정	-	출신국
②예비양부모	신청·상담·조사	-	보건복지부(위탁가능)
	양부모보고서작성	-	보건복지부(위탁가능)
	자격 심의	-	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
③아동-양부모 결연 (보호대상아동)		-	아동출신국
④입양허가		한국 가정법원	아동출신국 법원 (체약국간 효력 자동인정)
⑤사후관리	적응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위탁가능)
	정보공개청구	-	보장원

붙임 5

디딤씨앗통장 ' 24년 사업개요 및 홍보물

- (사업개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07~)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0~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 * 가입대상 연령 추이 : ('11) 12세 → ('16) 12~13세 → ('18) 12~17세 → ('24) 0~17세
 - * 소득기준 추이 : ('15) 생계·의료 급여 → ('24)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 원)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적립
 - * 지원한도 인상 추이 : ('07) 3만 원 → ('17) 4만 원 → ('20) 5만 원 → ('22) 10만 원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 기술자격 ·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 예외(조기인출) : 15세 이상, 적립기간 3년 이상이면 18세 이전이라도 학자금, 기술자격 · 취업훈련비에 한해 2회까지 사용 가능(단, 정부매칭금 제외)
 - ※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저축은 가능하나, 정부매칭금 지원 없음
- 사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금융기관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 적립금 후원 발굴, 아동저축 사례관리 등

함께 모은 마음, 두배의 희망으로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월 최대 50만원 저축 가능

후원 방법

1. 정기후원

신청서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금 인출

2. 일시후원

신청서 제출 및

아동권리보장원 무통장 계좌번호로 후원금 입금



아동권리보장원 무통장 계좌번호
국민 011201-04-214048

※ 후원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할 경우, 후원아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꿈나래통장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 대상 제외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후원 신청 방법

1.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소개 ▶ 아동자립(디딤씨앗통장) ▶ 후원신청

2. 후원신청서 수기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후원신청서 수기 작성 후 스캔본 혹은 사진 제출
• 메일: adongoda@ncrc.or.kr
• 문자: 1670-1834

2024년 3월부터 온라인 후원 신청 개시

자립정보ON 홈페이지(www.jaripon.ncrc.or.kr)에서
온라인 후원 신청 가능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G타워 6, 7층 아동권리보장원

